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글로벌이머징혼합형 신탁계약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신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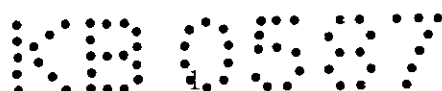
②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글로벌이머징혼합형”이라 한다.

③이 투자신탁은 채권과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유가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채권은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④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여 환율변동 위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환헷지거래에도 불구하고 헷지 거래대상 통화에 대한 환헷지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헷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위탁자의 업무를 영위하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
2. “투자일임업자”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위탁을 받아 투자신탁의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신탁업자”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탁자의 업무를 영위하는 (주)국민은행을 말한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법 제18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주)외환펀드서비스를 말한다.
5. “투자신탁재산”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으로서 그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말한다.
6.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금이 자산운용에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설정한 계정을 말한다.
7. “수익자”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특별계정에 납입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 및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배분 받는 보험계약자 등을 말한다.
8. “기준가격”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속한 자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에 설정(추가 설정 포함) 또는 인출되는 재산가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9.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개장일을 말한다. 다만, 아래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시장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도 불구하고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 산정
- ② 환매청구신청 당일

10. "종류형"이라 함은 수수료를 차별화하여 클래스별로 설정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1.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손익의 귀속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투자신탁재산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②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투자신탁재산 운용의 일임)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집합투자업자등에 일임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을 제1항의 방법으로 일임한 경우 그 내용과 범위를 신탁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위탁을 받은 투자일임업자는 위임된 업무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제6조(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금(상환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체결되는 약정에 의한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④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계법규 및 회계기준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기준가



격의 산정,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투자신탁재산 운용성과분석 보고서 등의 작성·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제7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 회사가 법 또는 이 계약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조(투자신탁의 설정) ①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는 최초의 투자신탁금을 현금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한다 .

②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제11조에 의한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납입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투자신탁 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 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0조(투자신탁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년도 매 12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년도중 처음 도래하는 회계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며, 투자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은 직전일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납입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계법규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좌는 1원으로 한다.

④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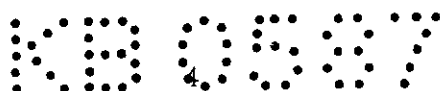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제2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2조(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으로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주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제4조제8항에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발행한 것(이하 “해외주식”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5. 법 제5조제2항 의한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이하 “금리스왑거래”라 한다)
 7.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9.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10. 증권의 차입
 11.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제13조(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1. 상장주식,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주식형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 주식, 채권 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한다.
2. 채권(자산유동화채권·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을 포함하며, 채권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는 제외), 채권관련파생상품(금리스왑거래포함), 채권형 수익증권, 어음,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3.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분의 100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100분의 50이하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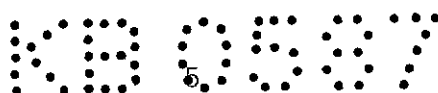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신탁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신탁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14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행위. 단,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

8.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3조제1항제5호, 이 조 제1항제2



호, 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
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
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은 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위탁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위탁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탁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
분 등을 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단기대출
4.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5.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6.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금리 또는 채권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로서 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7.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위탁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
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
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 행위의 철회
·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위탁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18조 (투자신탁의 폐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투자신탁을 폐지할 수 있다.

1. 당해 각 투자신탁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당해 각 투자신탁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제19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폐지 또는 법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의 뜻과 해지사유, 해지일자, 해지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사항을 사전에 신탁업자에 통지하고 해지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 지급시 현금화되지 않은 자산이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이 완료된 후에 집합투자업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신탁재산의 현금화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어려운 경우로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 자체의 인도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자의 이익과 상충할 우려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탁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 등의 방법으로 해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 중에서 그 금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의 매매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 및 집합투자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탁재산보관명세서를 작성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23조(신탁업자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가 영업의 일부·전부를 양도하거나 정
상적인 수탁업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신탁업자와 변경에 합의한 경
우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절차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신탁계약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6.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
우 그 내용
7.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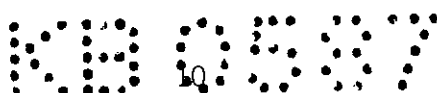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
지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따라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25조(관계법규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



할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은 2010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은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은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14. 8. 22.

집합투자업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
회 사 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 안 민 수

신탁업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회 사 명 :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 이 건 호

0848-10801885-19261584

